

# 르완다 (Rwanda)

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	봉급근로자, 전문직, 고용된 수습직원, 견습생, 공무원, 정무직 및 국가공무원	봉급근로자, 전문직, 고용된 수습직원, 견습생, 공무원, 정무직, 국가공무원, 르완다 거주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소속 근로자	적용대상 확대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3% / 6% / 3%	3% / 6% / 3%	-
보험료 부과 하한 / 상한 소득	법정최저임금 / 없음	법정최저임금 / 없음	-
연금수급 요건	60세 이상, 납부기간 180개월	60세 이상, 납부기간 180개월	-
노령연금 지급률	최종 3년 또는 5년 가입기간(높은 쪽)에 대한 월평균 소득의 30% + 180개월 초과 가입기간 12개월마다 2% 증액	최종 5년 가입기간에 대한 월평균 소득의 30% + 180개월 초과 가입기간 12개월마다 2% 증액	산식 일부 변경
일시금	최종 5년 평균소득 x 가입연수	최종 5년 평균소득 x 가입연수	-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6년
- 현행법 : 1974년(사회보장), 2003년(사회보장), 2015(연금제도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(Social insurance system)

## 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봉급근로자(단기직, 임시직 포함), 전문직, 고용된 수습직원, 견습생, 공무원, 정무직, 국가공무원, 르완다 거주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소속 근로자
- 임의적용 : 자영자(50세까지 가입가능) 및 이전 당연적용 가입자

## 4

### 재원조달

- 근로자 : 소득의 3%, 임의적용인 경우 6%
 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은 법정최저임금이며, 상한소득은 없음
- 자영자 : 신고소득(기본급, 수당, 기타 급여 포함)의 6%
 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은 가입자의 이전 기본급의 100%
  -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기본급은 매 3년의 임의 납부 후 30%까지 증액 가능
- 사용자 : 임금지급액의 3%
 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은 법정 최저임금이며, 상한소득은 없음
- 정부 : 없음, 사용자로서 기여

## 5

###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 - 노령연금
    - 60세 이상,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(조로(早老)의 경우 60세 도달 전 수령 가능)
   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   - 상호 협정에 의거 연금 해외 지급 가능
  - 노령청산금
    - 60세 이상, 가입기간 180개월 미만(조로(早老)의 경우 60세 도달 전 수령 가능)
- 장애연금
  - 장애연금
    - 소득활동 능력 50% 이상 상실 판정
    - 최소 5년 이상 가입기간(장애발생 직전 12개월 중 최소 6개월 이상 가입기간 포함)
    - 산업재해와 무관한 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소 가입기간 요건 없음
    - 상시간호보조금 :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
    - 사회보장기금이 승인하거나 지정한 의사가 정기적으로 장애를 재판정함
- 유족연금
  - 유족연금
    - 사망 전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80개월 이상이거나 연금 수급자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    - 수급가능 유족은 유족배우자, 18세 미만인 미혼 및 무직의 자녀(학생은 25세, 장애가

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)이나, 유족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(양부모 포함)

- 배우자 유족연금은 재혼 시 중지됨

• 유족청산금

- 사망 전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80개월 미만이고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

- 수급가능 유족은 유족배우자, 18세 미만인 미혼 및 무직의 자녀(학생은 25세,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)이나, 유족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(양부모 포함)

## 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

- 최종 5년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30% + 180개월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12개월  
마다 평균 월 소득의 2%씩 증액

- 가입자가 연금 청구일 직전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평균 월 소득은 최종  
고용된 5년간 보험료 납부금액을 60으로 나누어 계산

- 최저연금액은 법정 최저임금의 50%

- 급여는 계리산식의 결과대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됨

- 2개 이상의 연금 수급권(산재급여 포함)이 발생하는 경우, 각 급여 전액 지급

• 노령청산금

- 보험료 납부연수 x 해당 가입자의 최종 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(가입자의 납부기간이  
5년 미만인 경우 전체 납부기간) 월 평균소득의 100%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

- 최종 5년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30% + 180개월 초과 가입기간 12개월 당 평균  
월 소득의 2%씩 증액

- 60세 전에 장애연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, 매 1년마다 6개월의 가입기간 크레딧 인정

- 최저연금액은 법정 최저임금의 50%

- 상시간호보조금 : 장애연금액의 40%

- 급여는 계리산식의 결과대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됨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 50%

- 고아연금 : 고아 1인당 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  
25% (완전 고아는 1인당 50%)

- 기타 수급권 있는 부모에게 1인당 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 25% 지급
- 합산된 유족연금 총액의 상한은 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%
- 유족청산금
  - 배우자청산금 : 가입기간 6개월 당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
  - 고아청산금 : 고아 1인당 배우자청산금의 50% 지급. 고아에게 지급되는 전체 일시금의 합은 유족일시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
  - 기타 수급권 있는 부모에게 1인당 배우자청산금의 50% 지급
  - 급여는 계리산식의 결과대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됨

## 7 관리운영기관

- 재정경제기획부(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)
  -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
  - <http://www.minecofin.gov.rw>
- 사회위원회(Social Security Board)
  - 3자 위원회 및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제도 운영
  - <http://www.rssb.rw>
- 국세청(Rwanda Revenue Authority)
  - 보험료 징수
  - <http://www.rra.gov.rw>

<2019년 ISSA 자료>